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교육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구교육권리헌장(안)

2011. 6. 27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장 총 칙

학교는 교육 공동체의 소중한 만남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행정기관, 지역 사회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망스러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학생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함께 학생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숭고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학생 및 교육 관련 주체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 수업 활동과 생활 지도 활동 등을 통하여 교육의 가치와 행복을 느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랑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이다.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공교육의 책임을 국가에 위임한 자이다. 또한 학생 교육에 대한 동반자로서, 학생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각종 헌장 및 조례와 대구광역시 교육의 특색을 담아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민족, 국가, 출신 지역,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성향, 병력, 징계, 성적(成績)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2조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2절 양심·종교의 자유

제3조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4조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제5조 학생은 특정 종교 의식 참여 및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 학생은 타인의 양심과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절 학습에 관한 권리

제7조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9조 학생은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제10조 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절 의사 표현의 자유

제11조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학생은 교지 등 언론 활동,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간섭 또는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학생은 타인의 의사를 편견 없이 경청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생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절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

제16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절 사생활의 자유

제18조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할 경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보여 주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학생은 타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 학생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받을 수 있다.

제22조 학생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제8절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23조 학생은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아야 한다.

제24조 학생은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학생은 타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9절 휴식을 취할 권리

제26조 학생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절 학교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27조 학생은 신체적·언어적 폭력 및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학생은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절 건강에 관한 권리

제29조 학생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여학생은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학생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절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

제32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학생은 학교 시설 및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절 급식에 관한 권리

제34조 학생은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을거리로 조리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학생은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절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36조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학생은 타인의 문화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절 학생 복지에 관한 권리

제38조 학생은 적성 발견,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이탈 등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학생은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상담 등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절 소수 학생의 권리

제41조 빈곤, 장애,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고,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절 자치활동의 권리

제42조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학생은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 소집,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 한다.

제44조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치 활동에 임해야 한다.

제18절 학교 규칙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제45조 학생은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학생은 학교 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 기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학생은 제·개정된 학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절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48조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절 청구 및 청원권

제49조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0조 학생은 상담, 조사 등의 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1조 학생은 인권 침해에 관한 청구 및 청원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절 정보에 관한 권리

제52조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53조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절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55조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6조 학생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7조 학생은 학교 규칙에 의해 징계 받을 경우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교원의 권리와 책임

제1절 수업에 관한 권리

제1조 교원은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제2조 교원은 교육 활동 중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교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학문의 자유를 누릴 권리

제4조 교원은 가르치는 일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제5조 교원은 교육 내용 선택, 교육 방법 결정, 평가 및 학생 지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 연구자로서의 권리

제7조 교원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교원은 교육 연구자로서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제9조 교원은 양심과 법규에 따라 연구하여야 하며,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건강에 관한 권리

제10조 교원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

제11조 교원은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12조 교원은 직업적 안정을 위하여 교육 행정 기관 등 사회 제반 기관과 단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교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 교원은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제15조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

제16조 교원은 교육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교원은 육아와 교육 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교원은 무고한 행위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을 경우 교육 행정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교원은 교권 침해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교단 복귀를 위한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교원은 교육 관련 법규에 규정된 교육자로서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7절 학교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21조 교원은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원은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절 정보에 관한 권리

제24조 교원의 교육 저작권 등 개인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제25조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에 관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수단
에 따라 수집·처리·관리하여야 한다.

제9절 전문적 단체 조직 및 참여 권리

제26조 교원은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교직 전문성을 계발
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1절 의견을 제시할 권리

제1조 학부모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절 교육 활동 내용을 공지 받을 권리

제2조 학부모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안건 자료, 회의 일정, 회의 결과 등을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학부모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설문 결과와 활용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학부모는 장학생, 수상, 특별 프로그램 수강, 추천 학생 등의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하여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절 학생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권리

제6조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 폭력, 무단결석, 부적응, 급식 거부 등 학생 신상의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학부모는 학생의 질병, 장애, 신체적·정서적 특이 사항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4절 학생 상담에 관한 권리

제8조 학부모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학부모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상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5절 시정을 요구할 권리

제10조 학부모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학교 규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1조 학부모는 학교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차별 등 인권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학부모는 학생 체벌, 방과후학교 강제 수강 등 학생의 인 권이나 자유 선택권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학부모는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학부모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 학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학부모는 강제성 모금, 불법 찬조금 등 부조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침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6절 무기명을 보장받을 권리

제18조 학부모는 의견 제시, 이의 제기, 시정 요구 등을 할 때 무기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19조 학부모의 무기명을 보장받지 못한 설문 및 평가 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7절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권리

제20조 학부모는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학부모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학교 급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에서 동료 학생, 교원, 외부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학부모는 장애, 다문화, 부적응 등의 소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학부모는 교복 등 교육 소비재 공동 구매와 관련하여 학교에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학부모는 학부모회 등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에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절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위한 권리

제26조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아
야 한다.

제27조 학부모는 금품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요구받았을 경
우 거절할 책임이 있다.

제28조 학부모는 자원 봉사를 할 경우 자발적 의사를 보장받아야 한
다.

제29조 학부모는 불필요한 자원 봉사를 자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헌장(가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